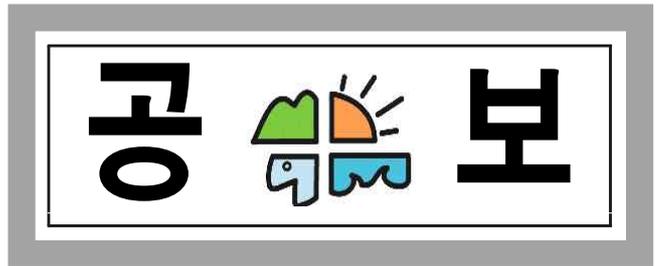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61호 2013년 4월 3일(수)

공 고

○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이 2012. 9. 22.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개정된 기준에 맞도록 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에 맞도록 민원사무 수수료 개정(안 별표 1)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속초시민의 날에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8조)

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일부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감면(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시민은 2013. 4.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전화: 033-639-2723(2720), FAX: 033-639-238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전화:033-639-2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630호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생략) 1. ~ 8. (생략) 신설</p>	<p>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u>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u></p>
<p>별표 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p> </div>	<p>별표 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 수하지 아니함.</p> </div>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증명, 확인	1. (계약·납품) 실적 증명	1건	무료	
	2. 공장에 관한 증명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1건	2,000	
	○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지방세 납세 증명	1통	무료	
	○ 지방세 과세(세목별) 증명	1통	800	
	4. 건축물에 관한 증명			
	○ 건축물대장 등·초본	1건	500	
	- 현황 도면 추가	1면	100	
	○ 건축물대장 열람	1건	300	
	5. 부동산에 관한 증명(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	1필지	1,000	
	- 컬러 발급의 경우	1필지	1,500	
	○ 개별공시지가 확인	1필지	800	
	○ 개별주택가격 확인	1주택	800	
	○ 공동주택가격 확인	1주택	800	
	6. 어업에 관한 증명			
	○ 어업권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 어선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7. 그 밖의 제 증명			
	○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건	1,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면허 등록 지정 등	1. 일반 행정 분야			
	○ 공유재산 대부 신청			
	- 신규	1건	5,000	
	- 갱신 또는 기간 연장	1건	3,000	
	2. 문화·체육 분야			
	○ 게임제작업 등록	1건	20,000	
	○ 게임배급업 등록	1건	20,000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30,000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1건	5,000	
	○ 공연장 등록	1건	10,000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 영화업 신고	1건	20,000	
	○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2,500	
	○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2,500	
	○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 출판사 신고			
	- 신규	1건	10,000	
	- 변경	1건	5,000	
3. 관광 분야				
	○ 종합유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70,000	
	○ 일반유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	
	○ 종합유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40,000	
	○ 일반유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20,000	
	○ 기타 유시설업 신고	1건	30,000	
	○ 기타 유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 유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4. 부동산 분야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	1건	무료	
	○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5. 산업·경제 분야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	
6. 농업·건설 분야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7. 환경 분야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8. 교통 분야			
	○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1건	6,000	
	9. 보건 의료 분야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5,000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5,000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 (양도·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1건	15,000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1건	15,000	
	○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1건	60,000	
	○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30,000	
	○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60,000	
	○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30,000	
	10. 해양 수산 분야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	3,700	
	○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7,300	
	○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300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2,500	
	○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500	
	○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1건	3,900	
	○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1건	7,300	
	○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 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	
	○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1건	1,000	
	○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900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1건	6,000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3,700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	
	○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1건	3,700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역어업 허가	1건	6,700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6,000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6,000	
	○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1건	2,200	
	○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1건	1,0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1건	1,000	
	○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1건	1,000	
	○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1건	2,000	
	○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200	
	○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2,000	
	○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 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 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1,600	
	○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1건	4,500	
	○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 구역 등 재결신청	1건	2,300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6,700	
	○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4,500	
	○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4,500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500	

구분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3,000	
	○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500	
	○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	
	○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 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 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 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 역서)	1건	1,000	
	○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 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	

[별표 2]

무인민발급기에서의 수수료

민원사무	기준	수수료(원)	비고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개별공시지가확인	1필지	4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관할 구역 안)	1필지	500	
토지대장(등본)	1필지	300	
건축물대장 등본	1통	300	
지방세 과세(세목별)증명	1통	400	
어선원부 등본	1통	400	
농지원부	1통	500	
자동차등록부	1통	200	
건설기계등록부(관내)	1통	300	
건설기계등록부(관외)	1통	800	